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화된 물위기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하여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의 기능을 조정하고, 홍수·가뭄 등 물재해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중 4명(5급 2명, 6급 2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환경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환경부에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 하천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에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에 국가하천 정비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과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 도시침수예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에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7명(5급 1명, 6급 12명, 7급 1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6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

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원 4명(9급 1명, 연구사 3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정원 1명(9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의 정원 6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의 정원 3명(6급 2명, 8급 1명) 및 환경부 소속기관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6.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관리 정책의 총괄·조정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 분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총괄
5.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등 수자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대응 수자원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8. 댐 등 수자원 개발 및 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
9. 댐 건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댐 관련 방재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1. 친수구역 조성정책의 수립 및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

13. 하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관리
14. 하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5.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16. 하천 및 유역의 치수(治水)·이수(利水)·환경·문화·경관 등 복합기능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7. 하천 관련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18. 하천의 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수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0. 수문조사 정책의 수립·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1. 수문조사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도시침수 대응 및 관련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수질환경기준·목표기준의 설정
24.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25. 수변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물이용부담금·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27.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28.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관리
29.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및 호소(湖沼)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0.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조사에 관한 사항

31. 새만금 유역 환경대책의 수립·시행
32.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규제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사후조치
33. 수질오염감시경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4.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및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35. 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6. 가축분뇨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관리
37.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38. 하수도의 정비·관리 등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빗물이용시설·중수도·하수의 재이용 등 물 재이용에 관한 사항
40. 하수도 서비스 평가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41. 하수도 자재 및 제품의 기준,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2. 하수도 찌꺼기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4.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의 운영
45. 수도 관련 방재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6. 물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47.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사항
48. 상수도 자재 및 제품의 기준,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9. 상수도(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에게 위임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통합운영 등 수도사업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50. 상수도 건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1. 상수도 서비스 평가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52.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제도 운영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3. 먹는물, 수처리제 및 정수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4.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토양보전을 위한 관련 사업의 추진

55. 지하수 제도의 운영·이용 및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56. 토양·지하수와 관련한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57. 한국군 및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토양·지하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8. 해수담수화, 지하수 및 강변여과수 등 대체수자원에 관한 사항

5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60.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 물분야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61. 물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1조제2항 후단 중 “45명”을 “46명”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환

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제6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별표 2 중 원주지방환경청란 및 전북지방환경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원 주 지 방 환 경 청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원 주 시
전 북 지 방 환 경 청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전 주 시

별표 4 중 총계 “1,861”을 “1,855”로 하고, 일반직 계 “1,861”을 “1,85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31”을 “1,825”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60조제8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전북지

방환경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환경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15명(6급 4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사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5]

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54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자원순환국 1개 과	1명
물관리정책실 1개 과	4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물관리정책실) ①·② (생략)	제10조(물관리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관리 정책의 총괄·조정	1. 물관리 정책의 총괄·조정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수변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물 분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총괄
5.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물이용부담금·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5.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등 수자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대응 수자원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
7. 새만금 유역 환경대책의 수립·시행	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8. 물 분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총괄	8. 댐 등 수자원 개발 및 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
9. 상수도(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9. 댐 건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댐 관련 방재대책 수립, 연

에서 같다) 통합운영 등 수도 사업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구개발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 건설·운영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11. 친수구역 조성정책의 수립 및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1. 전국 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의 운영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 별법」에 따른 하천관리기금 의 조성 및 운용
12. 수도 관련 방재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3. 하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 한 사항의 조정·관리
13. 물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14. 하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4. 상수도 서비스 평가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15.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정 비에 관한 사항
15.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제도 운영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하천 및 유역의 치수(治水) · 이수(利水)· 환경· 문화· 경관 등 복합기능의 개선 등 에 관한 사항
16. 상수도 자재 및 제품의 기 준,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7. 하천 관련 국제협력 및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17. 먹는물, 수처리제 및 정수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8. 하천의 운용 및 유지·관리 에 관한 사항
18.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토 양보전을 위한 관련 사업의 추진	19. 수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19. 지하수 제도의 운영·이용 및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20. 수문조사 정책의 수립·관 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0. 토양·지하수와 관련한 기	21. 수문조사시설계획 수립 및

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 21. 한국군 및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토양·지하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22.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수질환경기준·목표기준의 설정
- 23.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및 호소(湖沼)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24.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25.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 26. 가축분뇨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관리
- 27.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조사에 관한 사항
- 28.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및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 29.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규제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사후조치
- 30.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

관리에 관한 사항

- 22. 도시침수 대응 및 관련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3.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수질환경기준·목표기준의 설정
- 24.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25. 수변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6.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물이용부담금·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 27.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 28.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관리
- 29.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및 호소(湖沼)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30.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조사에 관한 사항
- 31. 새만금 유역 환경대책의 수립·시행
- 32.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규제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사후조치

한 피해의 예방 및 관리

31. 수질예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32. 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3.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34. 하수도의 정비·관리 등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빗물이용시설·중수도·하수의 재이용 등 물 재이용에 관한 사항

36. 하수도 서비스 평가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37. 하수도 자재 및 제품의 기준,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8. 하수도 찌꺼기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등 수자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40. 세계물포럼 등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41. 기후변화대응 수자원 전략

33. 수질오염감시경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4.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및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35. 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6. 가축분뇨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관리

37.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38. 하수도의 정비·관리 등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빗물이용시설·중수도·하수의 재이용 등 물 재이용에 관한 사항

40. 하수도 서비스 평가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41. 하수도 자재 및 제품의 기준,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2. 하수도 찌꺼기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

<u>수립 등에 관한 사항</u> <u>42. 도시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사항</u> <u>43. 댐 등 수자원 개발 및 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u> <u>44. 댐 건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45. 댐 관련 방재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u> <u>46. 수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u> <u>47. 수문조사 정책의 수립·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u> <u>48. 수문조사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49. 친수구역 조성정책의 수립 및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u> <u>5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u> <u>5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u> <u>52. 수자원분야의 해외 진출 지원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u>	<u>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u> <u>44.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의 운영</u> <u>45. 수도 관련 방재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u> <u>46. 물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u> <u>47.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사항</u> <u>48. 상수도 자재 및 제품의 기준,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u> <u>49. 상수도(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통합운영 등 수도사업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u> <u>50. 상수도 건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51. 상수도 서비스 평가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u> <u>52.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제도 운영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u>
---	---

<u>항</u> 53. <u>해수민물화, 지하수 및 강변</u> <u>여과수 등 대체수자원에 관한</u> <u>사항</u> 54. <u>물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u> <u>관리에 관한 사항</u> 55. 「<u>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u> <u>업 진흥에 관한 법률</u>」 제2조 제5호에 따른 <u>물산업 실증화</u> <u>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u>과 <u>운</u> <u>영에 관한 사항</u> 56. <u>하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u> <u>한 사항의 조정·관리</u> 57. <u>하천 관련 제도 및 정책의</u> <u>수립 등에 관한 사항</u> 58. <u>하천 및 유역의 치수(治水)</u> <u>· 이수(利水)· 환경· 문화·</u> <u>경관 등 복합기능의 개선 등</u> <u>에 관한 사항</u> 59. <u>하천 관련 국제협력 및 인력</u> <u>양성 등에 관한 사항</u> 60. <u>하천의 운용 및 유지·관리</u> <u>에 관한 사항</u> 61. <u>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정</u> <u>비에 관한 사항</u>	53. <u>먹는물, 수처리제 및 정수기</u> <u>관리 등에 관한 사항</u> 54. <u>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토</u> <u>양보전을 위한 관련 사업의</u> <u>추진</u> 55. <u>지하수 제도의 운영·이용</u> <u>및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u> 56. <u>토양·지하수와 관련한 기</u> <u>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관한</u> <u>사항</u> 57. <u>한국군 및 주한미군 주둔지</u> <u>역의 토양·지하수 환경관리</u> <u>에 관한 사항</u> 58. <u>해수담수화, 지하수 및 강변</u> <u>여과수 등 대체수자원에 관한</u> <u>사항</u> 59. <u>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u> <u>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에</u> <u>관한 사항</u> 60. <u>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 물</u> <u>분야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u> <u>사항</u> 61. <u>물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u> <u>관리에 관한 사항</u> 62. 「<u>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u> <u>업 진흥에 관한 법률</u>」 제2조
---	--

④ ~ ⑥ 삭 제 제51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 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 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 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 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u>45명</u>을, 3급 또 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 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 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 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 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 략) 제54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u>제5호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과 운 영에 관한 사항</u> 제51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u>46명</u>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54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	--

<u>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5와 같다.</u> ② (생 략) 제60조(한시정원) ① ~ ⑦ (생 략) <u><신 설></u>	<u>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u>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한시정원)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u>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861</u>	<u>1,855</u>	-6
일반직 계	<u>1,861</u>	<u>1,855</u>	-6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831</u>	<u>1,825</u>	-6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23